

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신규 대조표

기존 내용	개정 내용	개정사유
제3장 수업연한·학년·학기·휴업일 제6조(수업연한)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 으로 한다.	제3장 수업연한·학년·학기·휴업일 제6조(수업연한)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	- 누락
제5장 교육과정·수업일수·평가·과정수료·졸업 제11조(교육과정 편성·운영)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 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.	제5장 교육과정·수업일수·평가·과정수료·졸업 제11조(교육과정 편성·운영)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 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.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 을 수립하고,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 다.	- 누락
신설	제5장 교육과정·수업일수·평가·과정수료·졸업 제14조(출결처리) 신설 (붙임 참고)	- 생기부 기재 요령 근거
신설	제6장 학업중단 예방 제17조(학업중단 숙려제)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 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, 시행한 다.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 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「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」에 따른다.	초·중 등 교 육법 시행령 제9조 제1 항(대통령령 제32883호)
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6조(징계)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	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6조(징계)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포천노곡초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. 제37조(학생의 학교생활)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 활인권규정에 따른다.	-용어 수정

기존 내용	개정 내용	개정사유
<p>제11장 보칙</p> <p>제38조(학칙개정 절차)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(법, 조례, 지침등)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 (*공립의 각급학교)</p> <p>①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(법, 조례, 지침등)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. (*사립의 각급학교)</p> <p>② 제1항의 학칙개정안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사립은 지문)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,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 12 장 학교규칙 제·개정 절차</p> <p>제41조 (학칙개정 절차)</p> <p>① 공(사)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.</p> <p>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「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제46조에 따라 학부모, 학생,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,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의 과반수 2. 재직 교원의 과반수 3. 학부모 대표(학부모회 의결서 첨부) 4. 학생회 대표(학생회의 의결서 첨부) 5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<p>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</p> <p>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,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(학교규칙 제·개정)</p>